

1. 개정이유

저출산·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인구·지리·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자 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」 제정(법률 제17007호, 2020. 2. 18. 공포, 2021. 1. 1. 시행)으로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를 반영하여 관련 문구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‘등록사업자 현황’ 보고 조항을 삭제함(시행규칙 제7조, 별지 제3호서식)
- 나. 시·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‘말소된 등록사업자 현황’ 보고 조항을 삭제함(시행규칙 제15조, 별지 제12호서식)
- 다. 시·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‘업무 수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변경사항,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사항’ 보고 조항을 삭제함

제함(시행규칙 제16조)

라. 시·도지사에게 권한 이양으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사항이 없어
짐에 따라 ‘등록사업자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사항’ 보고 조
항을 삭제함(시행규칙 제19조)

마. 법률에 국토교통부장관의 ‘보고 및 감독’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제23
조 삭제(시행규칙 제2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6. 8. ~ 2020. 7. 20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

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

제16조제2항 중 “시·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6조제6항을 삭제한다

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

제23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중 “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(○○과장)”을 “수신 ○○ 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기 관 명

수신 ○○시·도지사

(경유)

제목 사업실적 현황 보고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- 아 래 -

구분	토지						시설						참여유형[건(%)]					
	사업건수 (건)	사업비 (백만원)		매출액 (백만원)		사업 면적 (㎡)	사업건수 (건)	사업비 (백만원)		매출액 (백만원)		사업 면적 (㎡)	A	B	C	D	E	F
		당 해 연 도	전 체	당 해 연 도	전 체	당 해 연 도		당 해 연 도	전 체	당 해 연 도	전 체	당 해 연 도						
법인																		
개인																		
합계																		

참여유형 : A. 단독, B. 등록사업자+등록사업자, C. 등록사업자+지주(공동사업주체),
D. 등록사업자+공공기관, E. 특수목적법인(설립근거 법률 명시), F. 기타

붙임 개발유형별 세부자료. 끝.

보고기관의 장 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 서명

협조자 직위(직급) 서명

시행 처리과명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전자우편주소

/ 공개 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을 작성·보관하고,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정보종합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7조(부동산개발업 등록대장의 작성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
② 시·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사업자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② <u><삭 제></u>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) ① (생략)	제15조(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의 공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별제 제12호	② <u><삭 제></u>

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

③ <삭 제>

한다.

제23조(보고 및 감독) 시·도지사는 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, 소비자 피해분쟁조정의 요청, 영업정지(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를 포함한다), 등록취소 등을 한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<삭 제>